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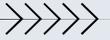
# 수산정책의 흐름과 법제도

2021. 6. 30.

소장/겸임교수 이 광 남

# 목 차

Contents



I

수산행정조직 변천사

II

수산정책의 변화 분석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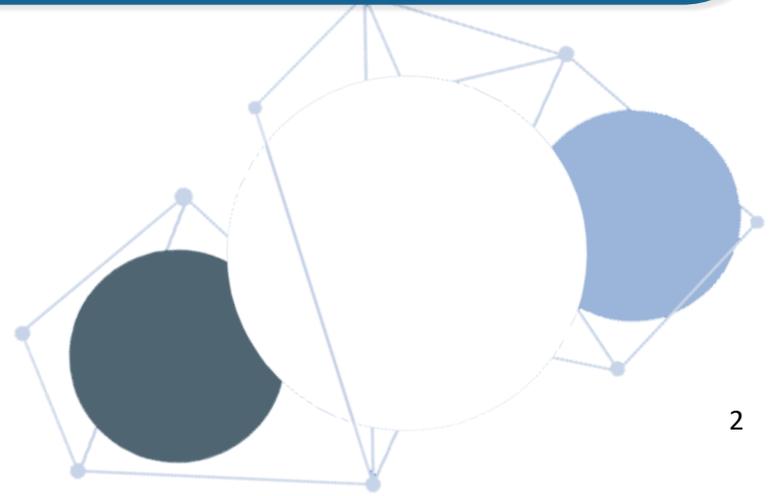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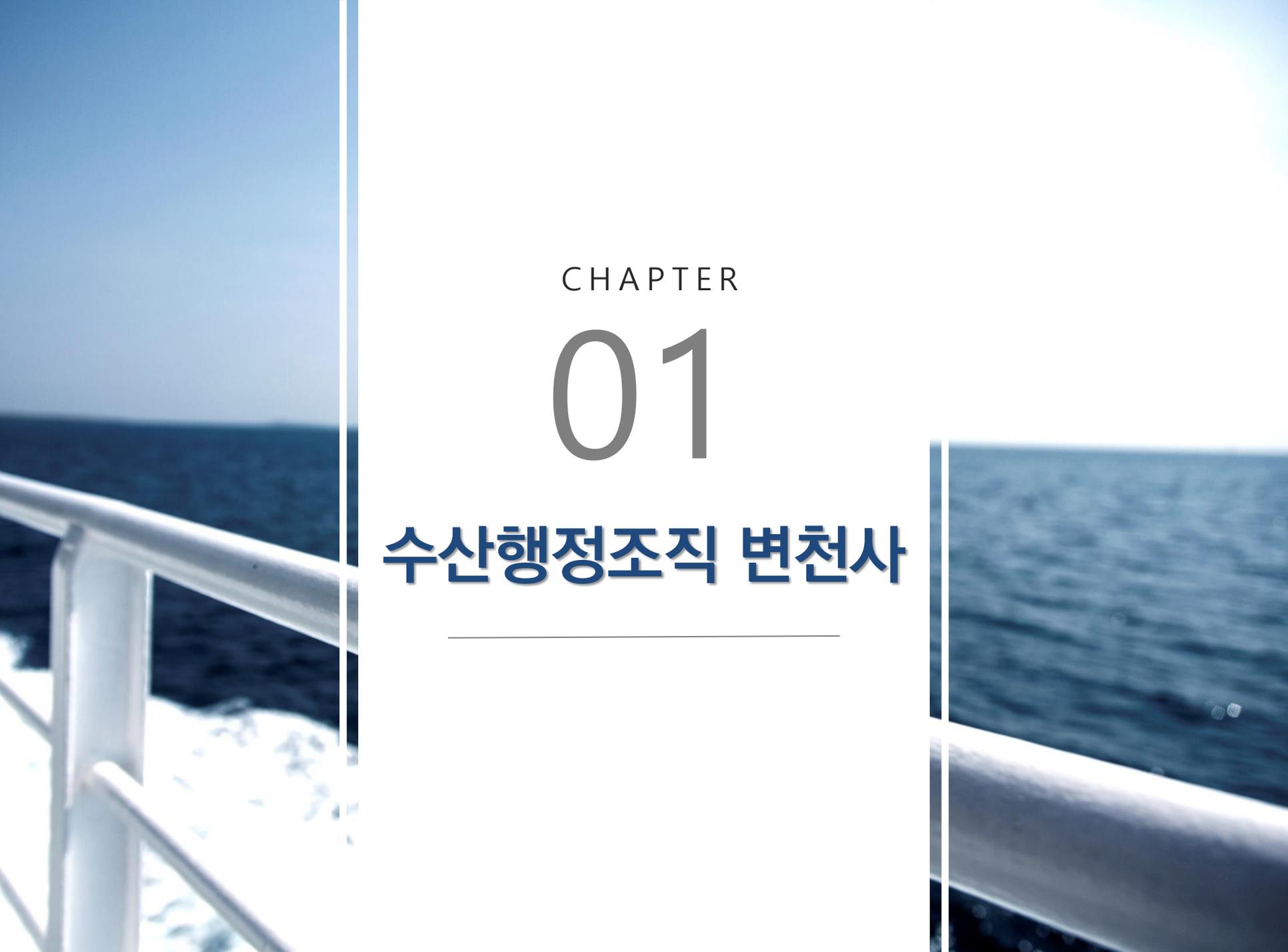
IV

수산분야 주요통계 분석  
(50년간)

V

국민들의 수산자원 이용  
현황과 과제





CHAPTER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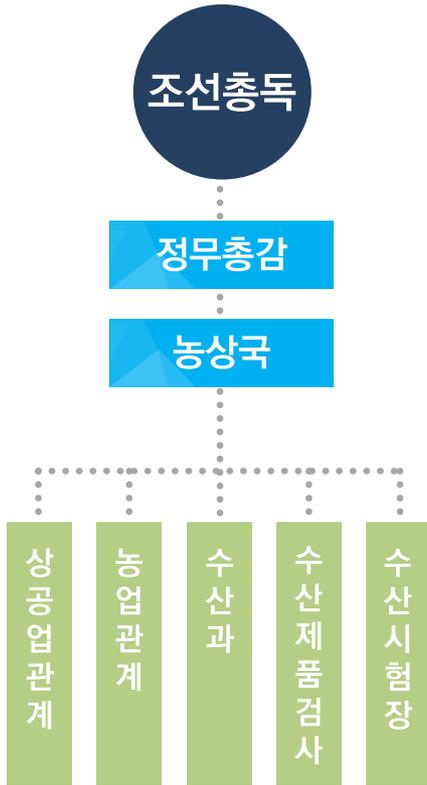
## 수산행정조직 변천사

---

# I. 수산행정조직 변천사

## 1. 제1기 : 해방이전(~194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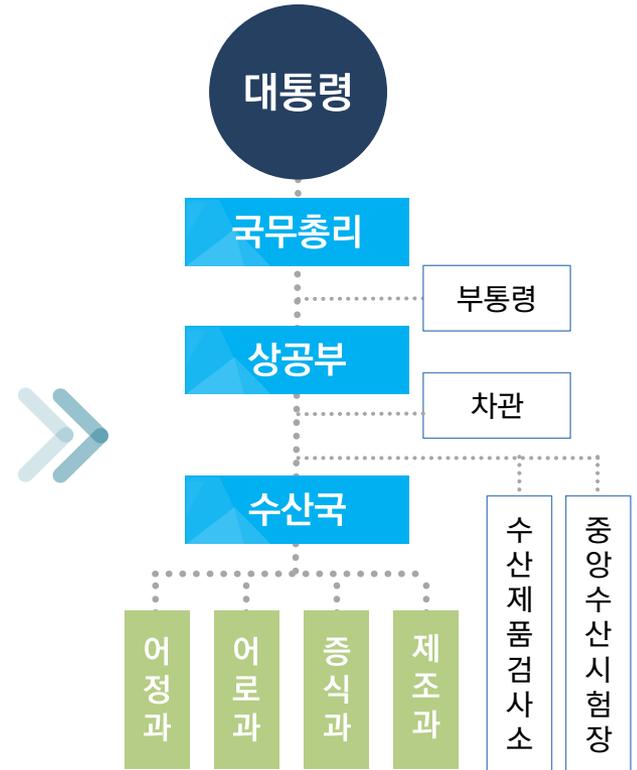
[해방이전 수산행정기구(1919년 이후)]



[군정하의 수산행정기구(1948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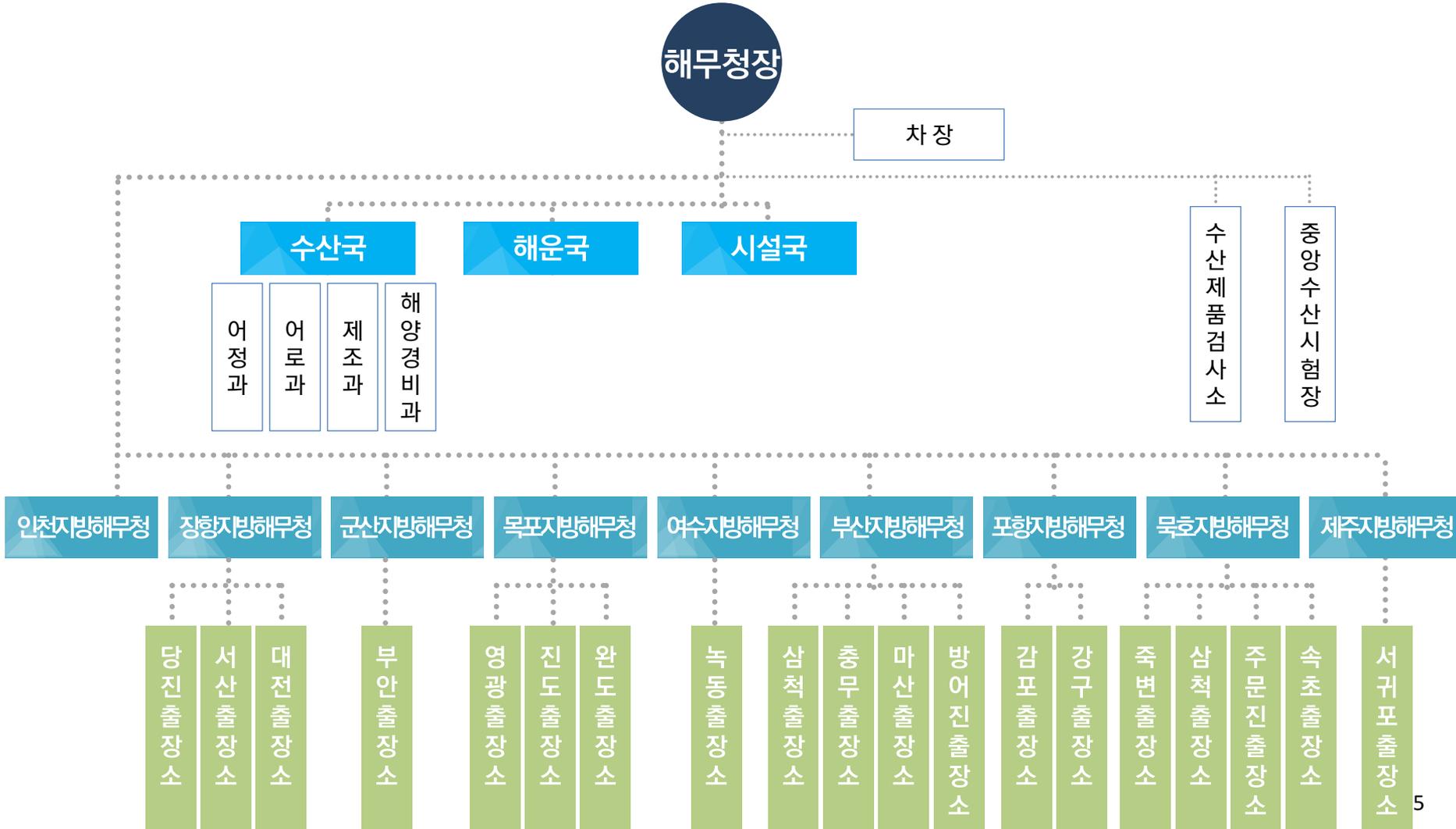
[상공부산하의 수산행정기구(1948년)]



# 1. 수산행정조직 변천사

## 2. 제2기 : 해무청(1955년~196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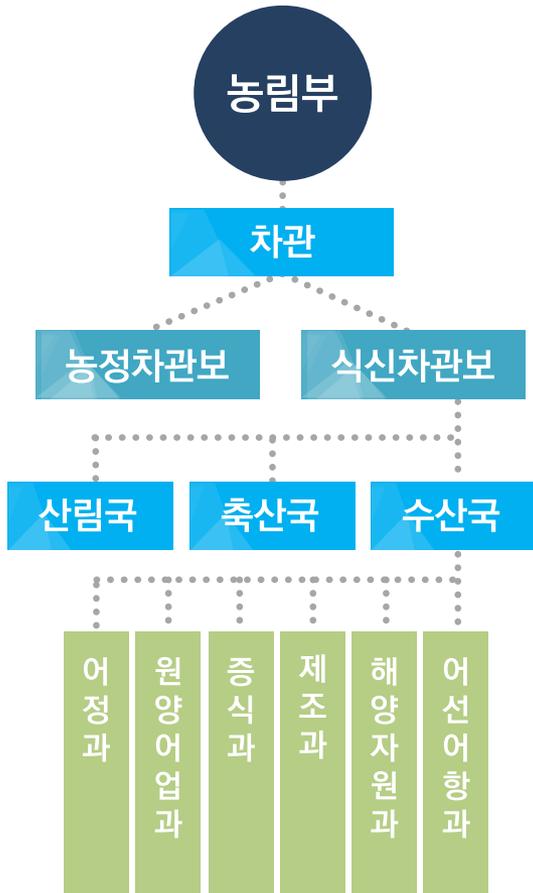
[해무청 수산행정기구(1955년~1962년)]



# 1. 수산행정조직 변천사

## 3. 제3기 : 농림부 수산국(1963년~1965년)

[농림부 수산국 수산행정조직(1963년)]



[중앙수산시험장 기구(196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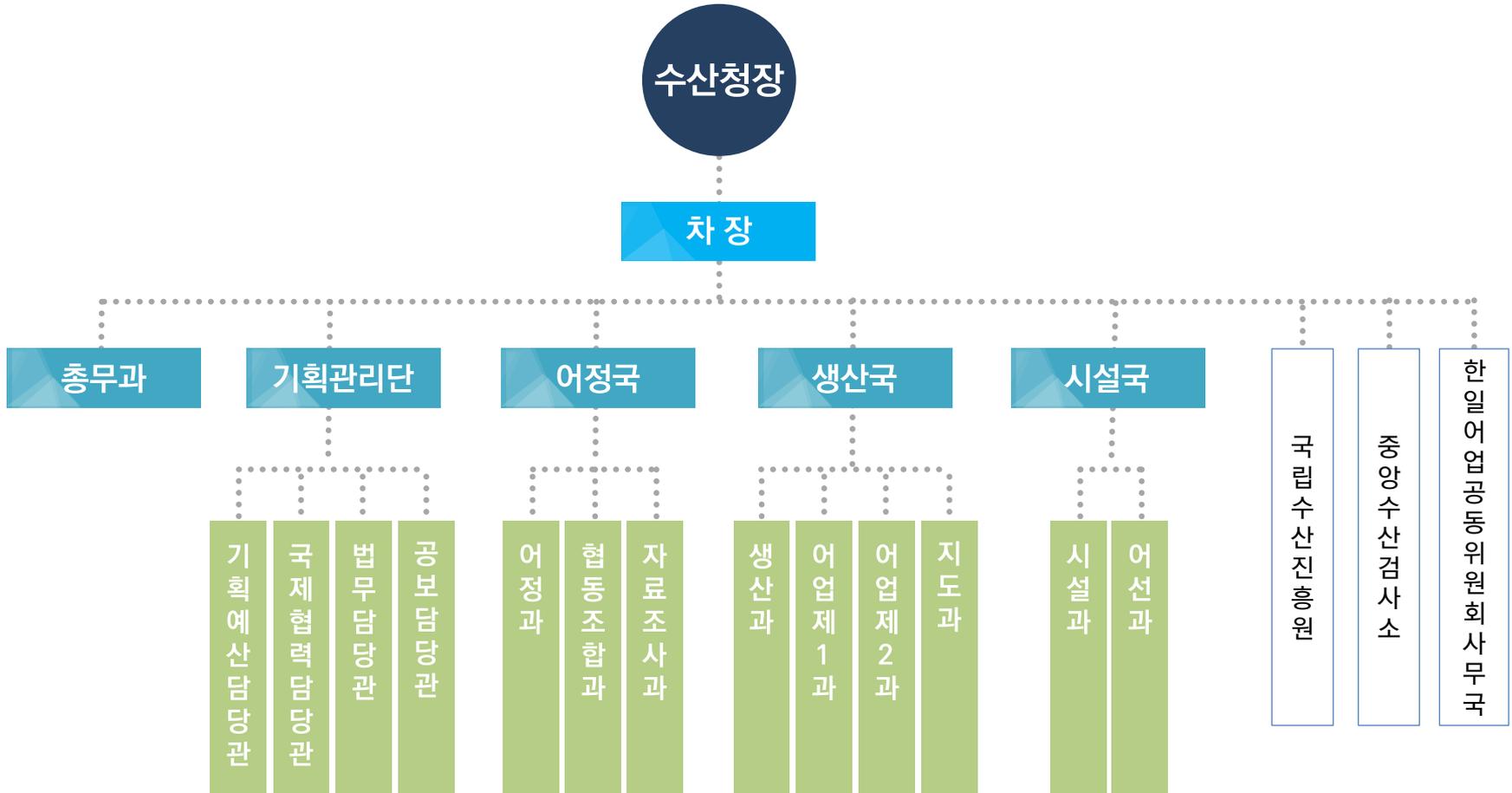
[국립수산진흥원 초창기 연구조직(1964년)]



# I. 수산행정조직 변천사

## 4. 제4기 : 수산청(1966년 ~199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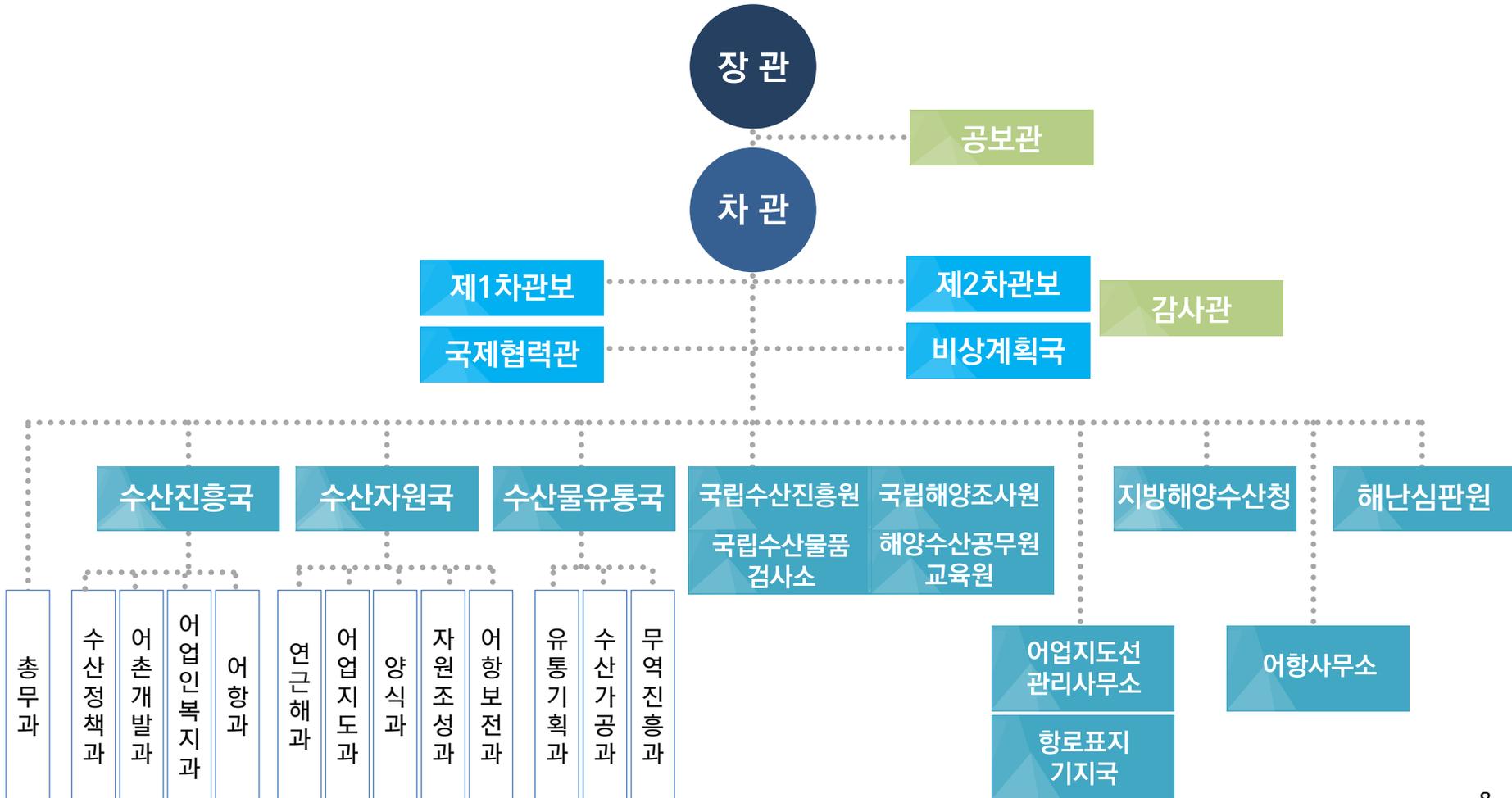
[수산청 행정기구(1966년~1995년)]



# 1. 수산행정조직 변천사

## 5. 제5기 : 해양수산부 (1996년~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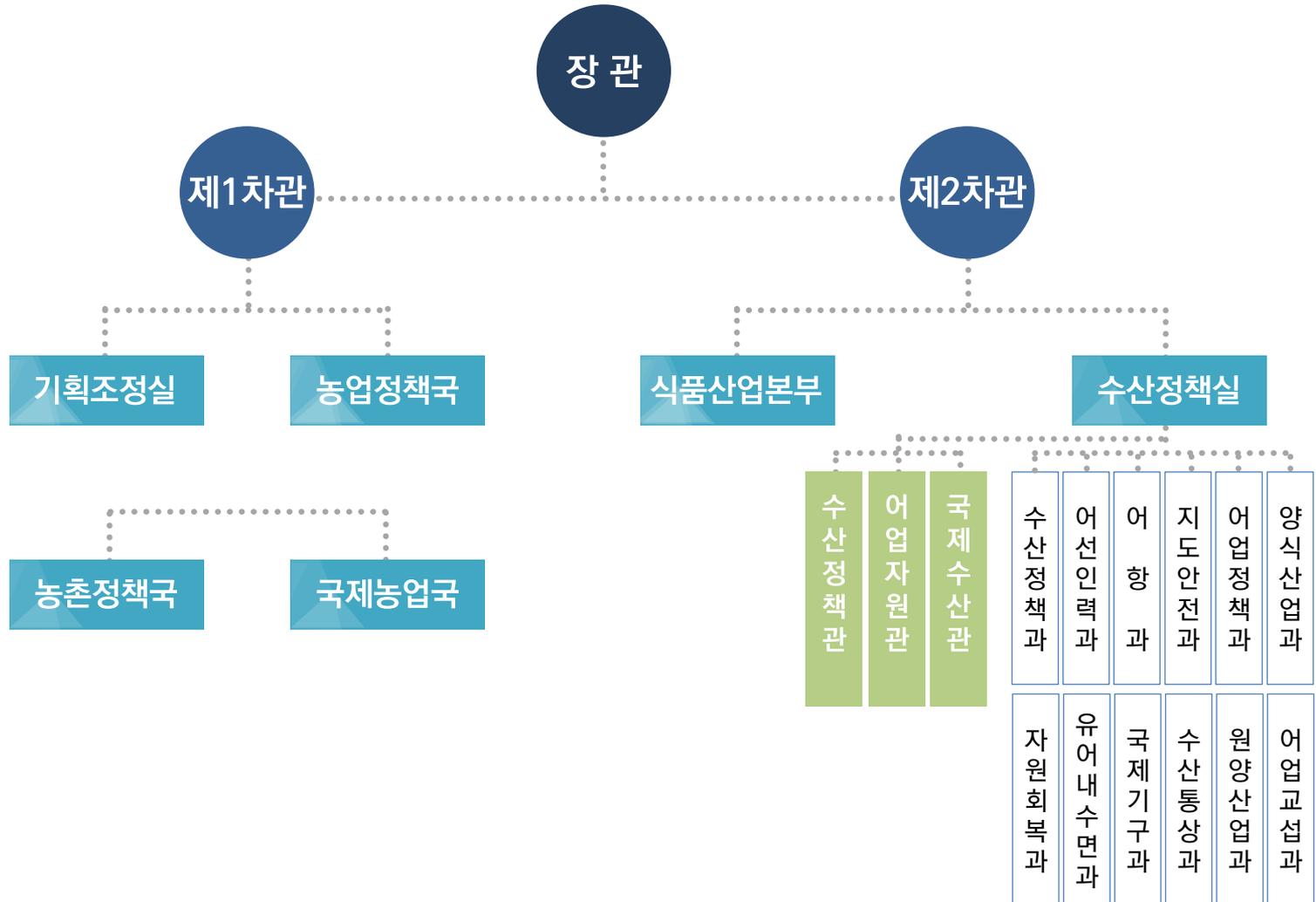
[해양수산부 수산행정기구(1996년~2007년)]



# 1. 수산행정조직 변천사

## 6. 제6기 : 농림수산부 수산조직(2008년~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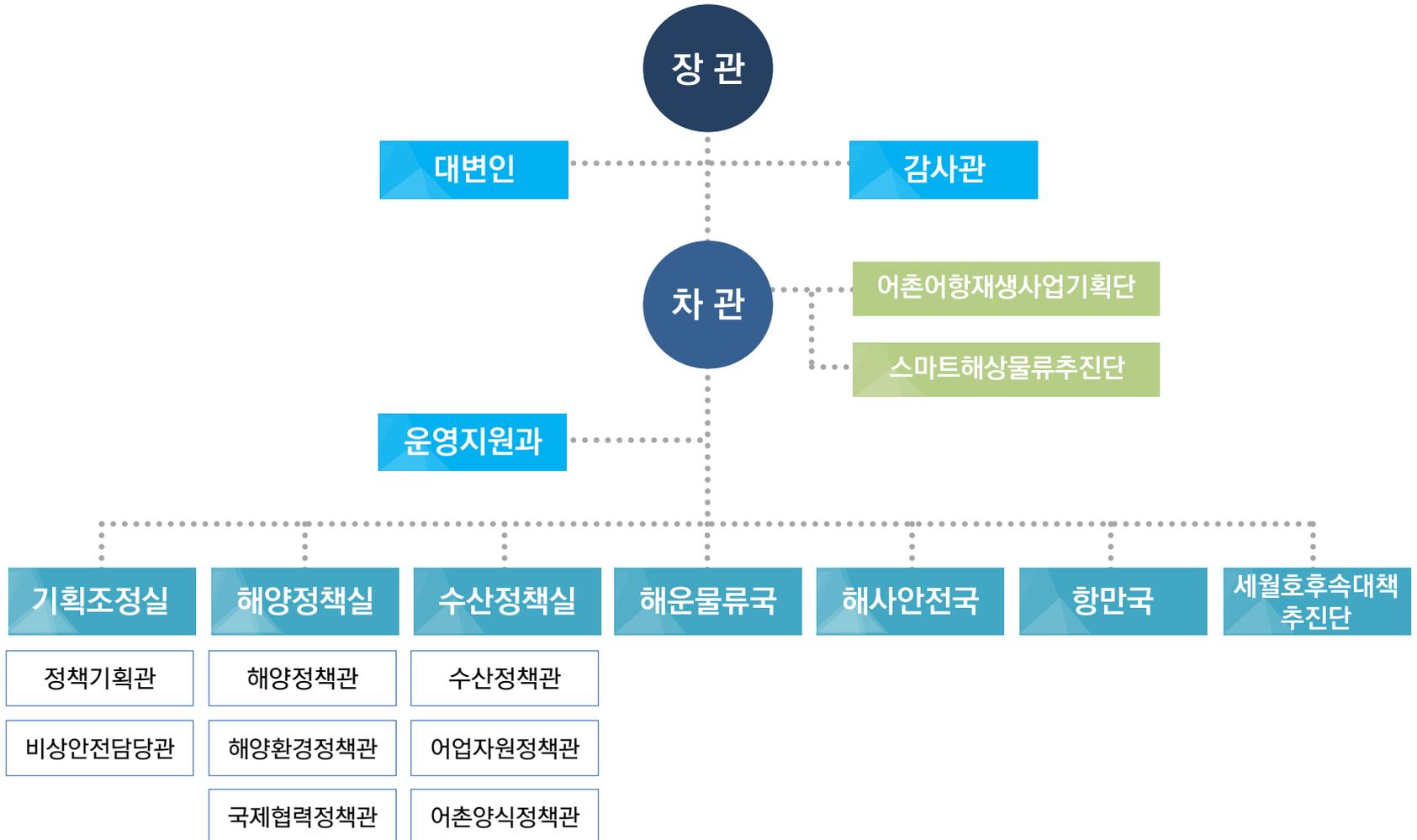
[농림수산부 수산조직(2008년~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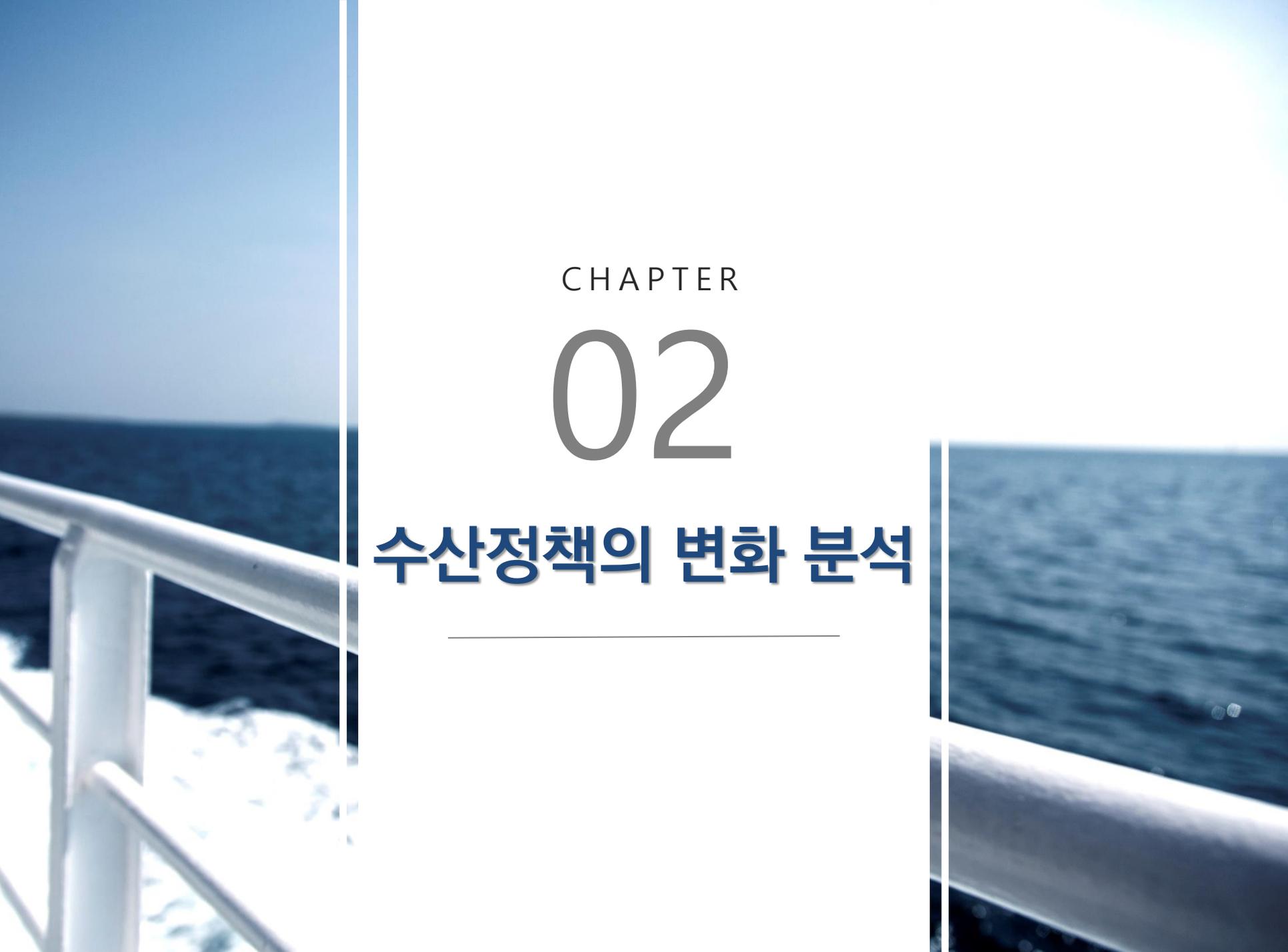


# 1. 수산행정조직 변천사

## 7. 제7기 : 해양수산부 부활 수산부문 행정조직 (2013년~현재)

[해양수산부 조직현황(2013년~현재)]





CHAPTER

# 02

## 수산정책의 변화 분석

---

# II. 수산정책의 변화 분석

## 1. 수산업의 발달과정(1)

### 연도별 수산정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960년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무동력 소형어선, 재래식 어로장비, 전통적인 어획 방법</li></ul>
1960년대 개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제개발계획 과정-1차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 해외기술도입, 어업구조개선</li><li>• 수산물 수출로 외화 획득</li><li>• 양식업(해조류)을 추진</li></ul>
1970년대 성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산물수요 증가, 양식 및 근해어장 개발과 원양어업 진출</li><li>• 패류(조개류) 양식기술도입</li></ul>
1980년대 전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인접국 어업 활동 규제, 수산업 성장 정체, 어선 대형화·양식어장 개발 주력</li><li>• 양식업 : 어류 양식 기술 도입</li></ul>
1990년대 침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산자원의 남획 및 환경 오염, 세계 연안국 조업규제 강화</li><li>• 한일, 한중 어업협정 조업규제 및 어획량 규제-정체 심화</li></ul>
2000년-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속가능한 수산업 구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도</li><li>• LED 집어등 개발(2007년), 넙치 및 전복 육종 프로그램 개발(2008년)</li></ul>
미래전망(20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글로벌 수산물 수급관리 및 국제적인 수산기업 육성</li><li>• 오감이 즐거운 수산 웰빙공간 및 산업과 휴양이 공존하는 어촌</li><li>• 로봇조업선 등 신개념 양식장관리선 및 연근해어선 개발</li><li>• 미래형 신소재 냉동보관 기술 개발 등</li></ul>

# II. 수산정책의 변화 분석

## 1. 수산업의 발달과정(2)

### 수산정책의 변화와 수산업의 위치

시기	수산정책변화		수산업의 위치	수산기술 발전
	정책성격	주요 시책		
1950년대	근대적 어업기반 조성기	수산제도 정비	1차 산업	전통적 수산기술 위주의 어업생산
1960년대	증산기	연근해어업 증산 원양진출	1차 산업	연근해 어업기술 개발 - 다획성 어종 어구어법 개발 원양신어장 개척 - 인도양, 사모아, 남극 크릴어장 개척
1970년대	증산/수출기	생산/수출 증대	1차 산업	양식품종 다양화와 자원조성 관리 - 해조류와 패류의 인공종묘생산 수산식품가공과 위생관리 - 수출용 패류 위생관리 기반 확립
1980년대	어정 갈등기	UR 대책 (개방화 시작)	1, 2차 산업 (소비 다양화)	고급 양식품종 생산기술 개발 - 어류, 갑각류 양식기술 개발 어업자원 평가와 수산공학기술 개발 - 국제기구 자원평가 참여와 조업자동화
1990년대	어업재편기	어업구조조정 대책 (완전개방)	1, 2차 산업 (소비다양화/고급화)	첨단기술의 어업활용 - 원격탐사, 생명공학기술의 육종이용 환경어업과 책임있는 관리형 어업
2000년대	독자적 어업기반 조성기	수산진흥종합대책 /뉴라운드 대책	1, 2, 3차 산업 (해양생명 산업지향)	EEZ자원 관리이용 극대화 해양개발의 위성시대 개막 해양 목장화의 실현
2020년 이후	ICT 기반 수산업 추진기	ICT 기반 수산업 발전 (양식 부문)	제4차 산업혁명 연계	ICT 기반 양식업 발전 ICT 기반 외해가두리 양식 TAC 제도 정착과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 II. 수산정책의 변화 분석

## 2. 단계별 수산진흥계획의 수립과 특징

☑ 수산진흥계획(67~98) 22년 간 49,041억 원, 수산종합대책(99~2020) 21년 간 282,035억 원 투입

- 43년 간 총 331,076억 원 투입 되었으며 투융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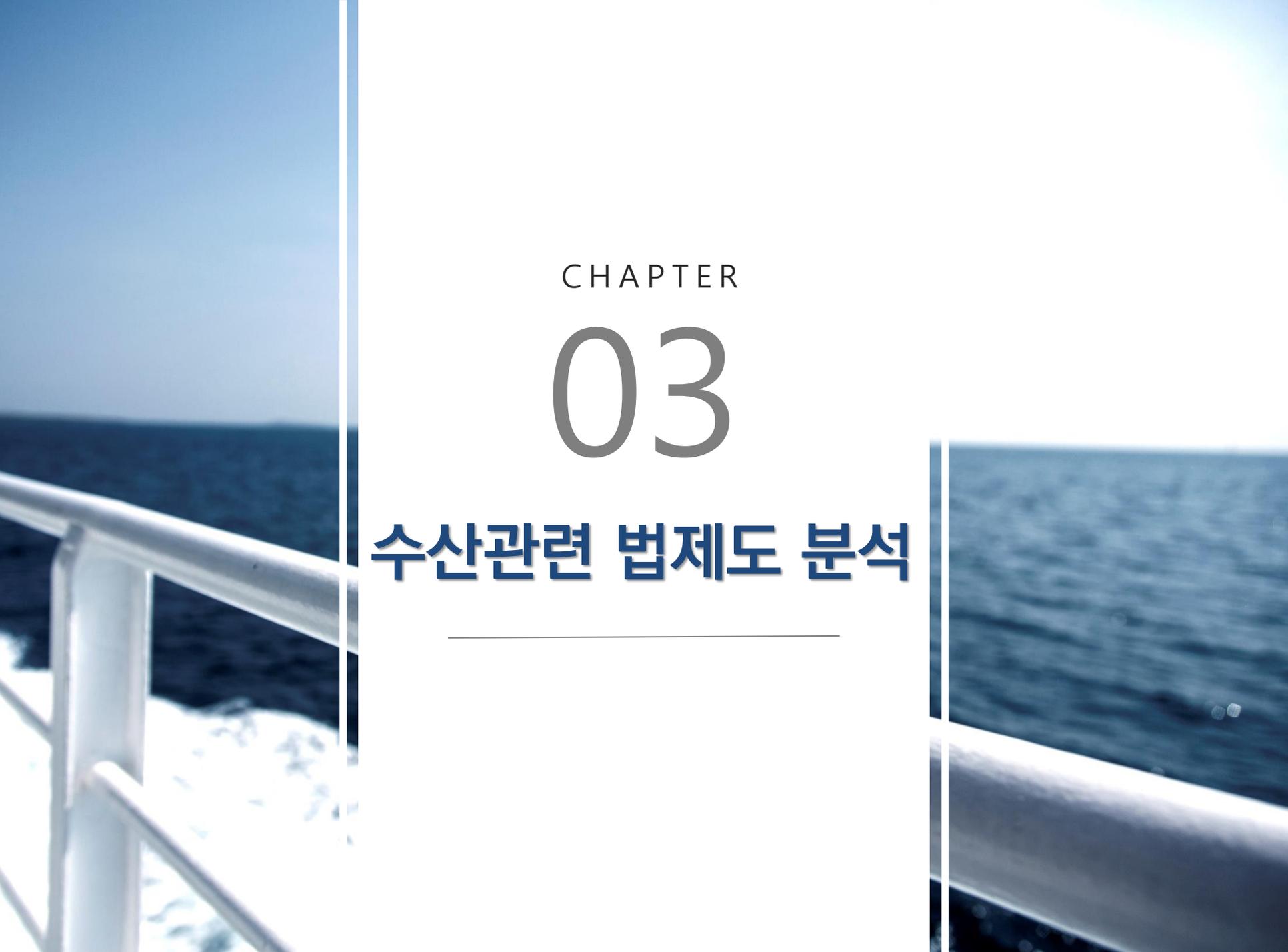
계획단계		계획기간	투융자규모	계획의 명칭
제1차 경제개발계획 중 수산부문		1962~1966(5년)	75억	수산부문 사업계획
수산진흥계획	제1차	1967~1971(5년)	534억	수산진흥계획
	제2차	1972~1976(5년)	561억	
	제3차	1977~1981(5년)	1,073억	연·근해어업진흥계획
	제4차	1982~1986(5년)	3,878억	연·근해어업진흥과 원양어업 육성계획
	제5차	1987~1991(5년)	12,019억	연·근해어업 목장화계획
	제6차	1992~1998(7년)	30,976억	연·근해어업구조개선 중장기 계획
수산종합대책	제1차	1999~2004(6년)	67,597억	수산업 및 어촌 종합대책
	제2차	2005~2009(5년)	55,822억	수산종합대책
	제3차	2010~2014(5년)	71,223억	
	제4차	2016~2020(5년)	87,393억	

## II. 수산정책의 변화 분석

### 3. 수산정책과 투·융자 배분 상황

- ☑ 수산진흥계획(67~98) 22년 간의 예산은 대부분 생산부문에 집중하였으나, 수산종합대책(99~2020)에서는 생산지원부문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음

구분	계획	부분별 비중(100%)		
		생산부문	유통부문	생산지원부문
수산진흥 계획	제1차(1962-1966)	81.3	6.3	12.4
	제1차(1967-1971)	60.4	6.5	33.0
	제2차(1972-1976)	67.2	9.4	23.4
	제3차(1977-1981)	71.8	8.0	20.2
	제4차(1982-1986)	69.6	8.0	22.4
	제5차(1987-1991)	51.2	25.7	23.1
	제6차(1992-1998)	-	-	-
수산종합 계획	제1차(1999-2004)	33.2	20.1	46.7
	제2차(2005-2009)	27.6	13.8	41.4
	제3차(2010-2014)	41.9	11.6	46.5
	제4차(2016-2020)	17.6	32.3	50.2



CHAPTER

# 03

##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1. 이용권 관련 수산분야 법률 현황(1)

### 분야별 법률 현황(' 21.2.18 현재)

- ❖ 해양수산부 법률 총 107개이며, 그 중 수산분야 법률 43개(20개는 농림부 등 타부처와 공동)로 구성되어 있음
  - 46개 중 수산정책 21개, 어업자원 7개, 어촌양식 18개로 구성

구분	해양수산부 소관(수산분야)	타부처 공동
소계	26	20
수산정책	10	11
어업자원	7	-
어촌양식	9	9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1. 이용권 관련 수산분야 법률 현황(2)

### 수산관계법령 내용별 체계도

해 면

구 수산업법  
(‘53.9)

연근해

- 수산업법
  - 면허, 허가, 신고어업을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되, 수산업의 육성, 어업조정, 기금 및 보상 등을 규정
- 수산자원관리법(‘09.4)
  -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96.8)
- 어업자원보호법(‘53.12)
  - ‘51 이승만라인 법제화(관할수역에 독도 포함)

양식산업

- 어장관리법(‘00.1)
  - 어장(면허 및 일부 허가어업) 환경 보전 개선
- 수산동물질병관리법(‘07.12)
  - 수산동물질병에 관한 종합적 관리
- 수산종자 산업 육성법(15.6.22 제정, 16.6.23 시행)
- 양식산업발전법(‘20.12)

원양

- 원양산업발전법(‘08.2)
  -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국제협력 촉진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1. 이용권 관련 수산분야 법률 현황(3)

### 수산관계법령 체계도

#### 내수면

- 내수면어업법('76.7,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법(2017.11.28 제정)

#### 유 어

- 낚시관리 및 육성법('11.3.9공포, '12.9.10 시행)
- 어업인 소득 증대(낚시어선 승객 안전 및 낚시 어선업 발전)

#### 안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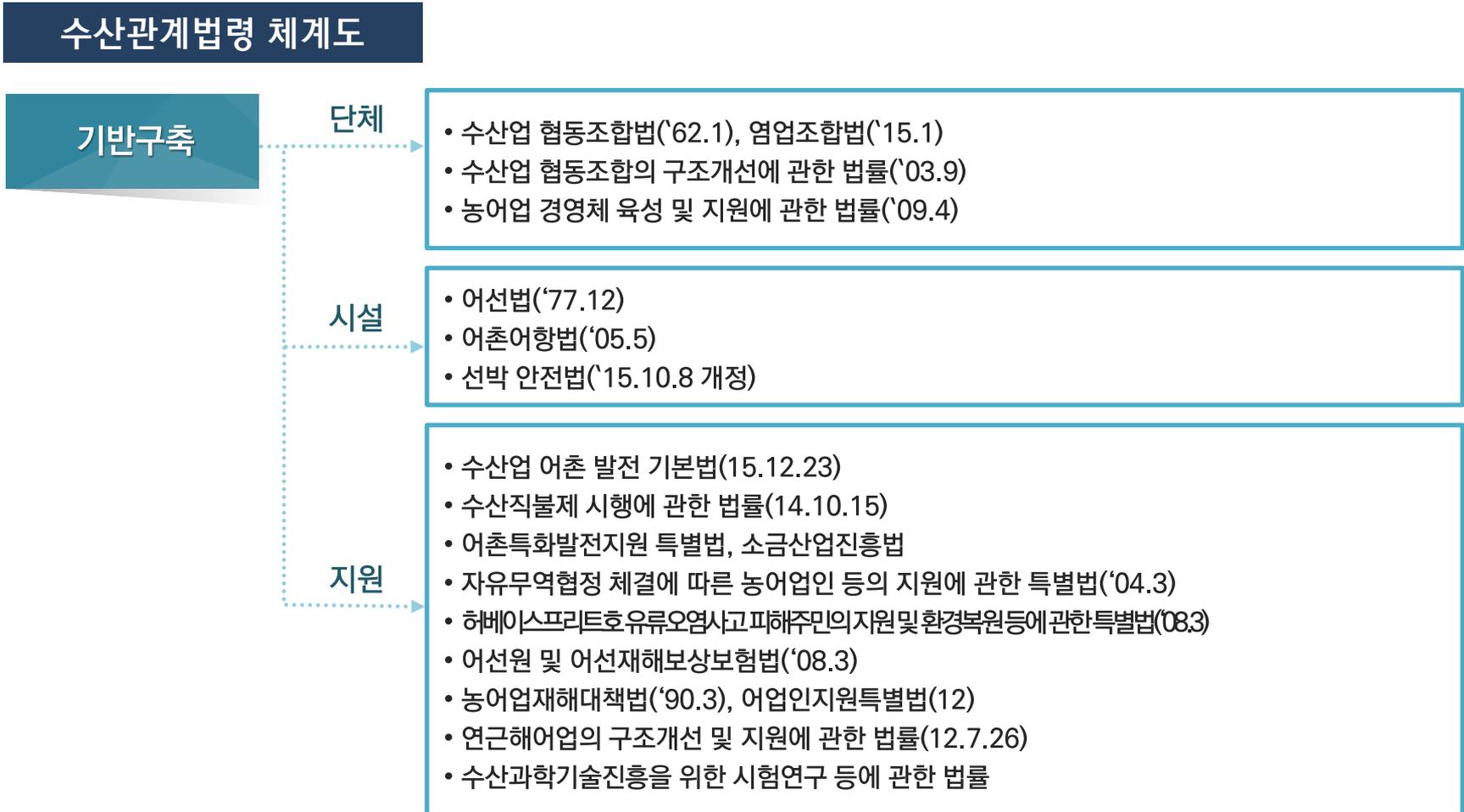
- 수산물품질관리법('01.1)
-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가공산업 육성(양식수산물 안전 일부 포함)

#### 수산물 유통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3.27 제정)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제정)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1. 이용권 관련 수산분야 법률 현황(4)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2.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분석(1)

### 1) 수산업법 - 연혁

- ❖ 수산업법(1953.9.9, 법률 제295호로 제정 및 공포)
  - 정부수립 후 최초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 마련
- ❖ 수산업법 전면개정(2009.4.22 공포, 2010.4.23 시행)
  -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및 각 법률에 규정하고 있던 수산업의 육성 부분을 수산업법에 통합
- ❖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명
  - 어업등록령(대통령령)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li><li>•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li><li>•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li><li>•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li></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li><li>•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칙</li><li>• 선박안전 조업규칙</li></ul> |
|---|---|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2.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분석(2)

### 1) 수산업법 - 목적

- ❖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

구 분	세 부 내 용
수산업의 기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업에 관한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어장이용에 관한제도</li> <li>• 어장의 이용형태에 따라 면허어업제도, 어업허가제도 및 신고어업제도로 구분</li> <li>• 수산물유통 및 가공제도, 어업단속제도, 자원관리제도, 어장관리제도, 어업조정 및 분쟁해결제도, 어업보상제도 등 규정</li> </ul>
수면의 종합적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면의 종합적 이용:</li> <li>• 어장이용개발계획세부지침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li> </ul>
수산업 발전 어업의 민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업의 허가 또는 어업권의 설정 및 취소에 있어 지나친 행정권 규제</li> <li>• 영세 어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면허 자격규정의 엄격화</li> <li>• 일정 요건을 갖춘 연안어업 종사 어민들의 원양어업 종사 허용</li> <li>• 봉건적 착취와 신분적 예속 관계 타파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자유전(耕者遺傳)과 같은 정신아래 어업이익의 독식을 불허한다는 근본원칙에 입각</li> <li>- 생산의 협동화 / 경영의 다각화 / 노동생산성의 증진</li> </ul> </li> </ul>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2.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분석(3)

### 1) 수산업법 - 주요내용

#### ❖ 목적(법 제1조)

-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 도모

#### ❖ 정의(법 제2조)

구 분	세 부 내 용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
어장	•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
어업권	•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입어자	• 어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당해 수면에서 계속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어업권 원부에 등록된 자

#### ❖ 적용수면(법 제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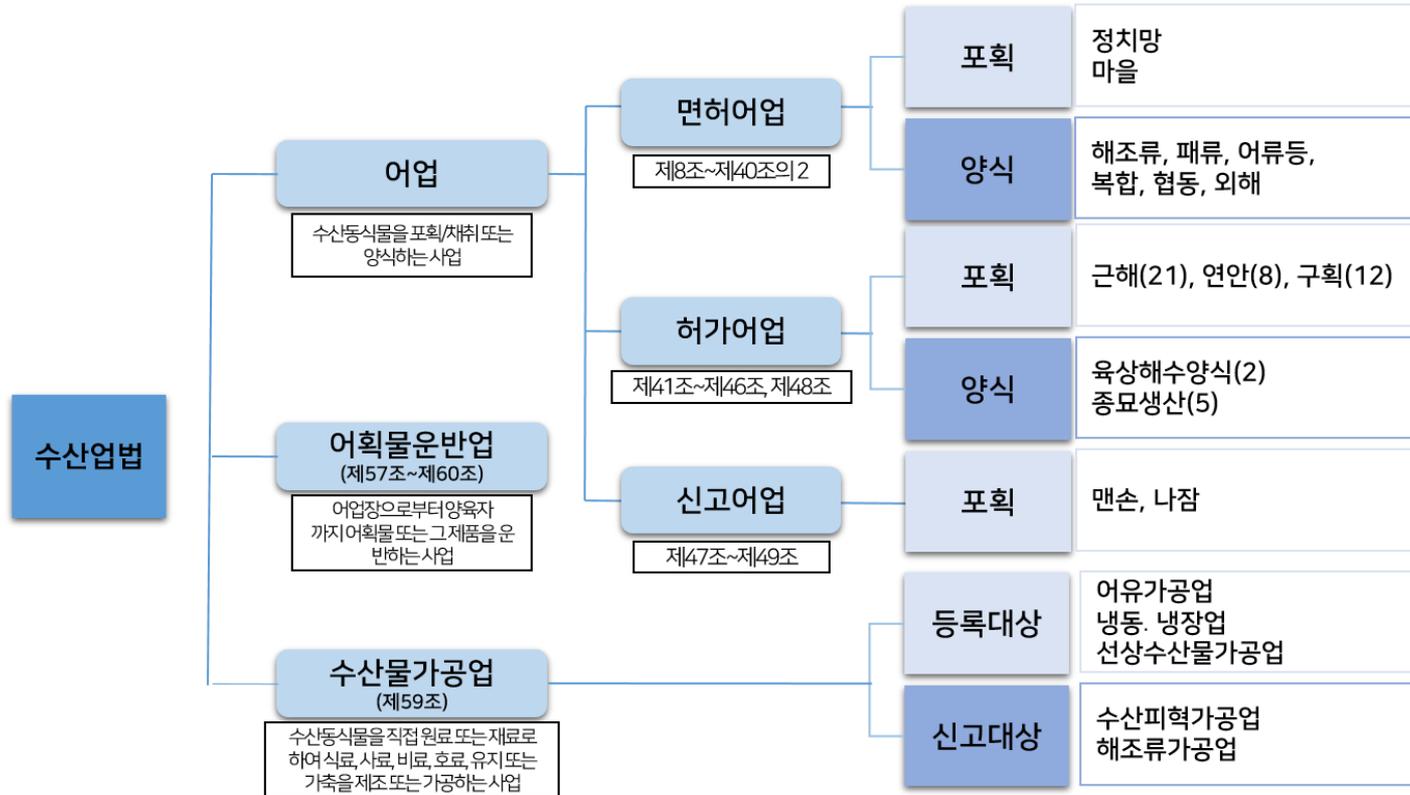
- 바다 및 바닷가
-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2.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분석(4)

### 1) 수산업법 - 주요내용

#### ❖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분류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2.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분석(5)

### 2) 수산자원관리법 - 필요성

수산자원관리법 제정

제정: 2009. 4. 22, 시행 :2010. 4. 23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수산자원 관리의  
체계화 · 종합화

수산자원의  
관리기반 취약

수산자원 관리  
법체제의 확립

수산자원보호령의  
법적 한계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2.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분석(6)

### 2) 수산자원관리법 – 주요내용

#### ❖ 목적(법 제1조)

- 수산자원관리계획 수립,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 정의(법 제2조)

구분	세부내용
수산자원	•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
수산자원관리	•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
총허용어획량	•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
수산자원조성	• 일정한 수역에 어초/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묘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

※ 상기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적용수면(법 제3조)

- 바다 및 바닷가
-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함)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2.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분석(7)

### 2) 수산자원관리법 – 주요내용

- 1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7조~ 제9조)
- 2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법 제10조~ 제12조)
- 3 수산자원의 보호 (법 제14조~ 제27조)
- 4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자협약제도 (법 제28조~제33조)
- 5 수산자원 회복 및 조성 (법 제35조~ 제45조)
- 6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46조~ 제53조)
- 7 TAC 제도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2.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분석(8)

### 2) 수산자원관리법 – 포획·채취 등 제한

#### 포획·채취 금지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제한
- 특정 어종의 암컷 포획·채취 금지
- 수중에 방란된 알 포획·채취 금지

#### 조업금지구역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설정(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음
- 방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 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누구든 이 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금지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2.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분석(9)

### 2) 수산자원관리법 – 포획·채취 등 제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소·기간·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휴어기의 설정**

- 해역별 또는 어업별 휴어기의 설정·운영
-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는 조업이나 해당 어업 금지
- 휴어기의 설정으로 인한 어업제한에 대해 재정적 지원(행정관청)

구분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lt;개정 2020. 9. 25.&gt;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망</li> <li>족대, 반두, 4수망</li> <li>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li> <li>가리, 외통발</li> <li>낮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li> <li>잡게, 갈고리, 호미</li> <li>손</li> </ol> </li> </ul>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2.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분석(10)

### 2) 수산자원관리법 – 어선·어구어법 등 제한

#### 조업척수의 제한

-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보호가 필요한 경우 : 허가 정수에도 불구하고 조업척수를 제한
- 조업척수 제한 어선 : 감척이나 피해보전 등의 필요한 지원

#### 어선의 선복량 제한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산업법」 제 41조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선복량(船腹量)을 제한
- 선복량을 제한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
- 다른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 설정(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어선의 사용제한

-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
- 어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어업의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
-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어구의 사용금지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
-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 사용 금지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2.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분석(11)

### 2) 수산자원관리법 – 어선·어구어법 등 제한

####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 금지
- 금지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 금지

#### 환경친화적 어구사용

-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서식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장려
-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어구사용의 확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지원

####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 포획·채취금지, 어구의 사용금지,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규정의 적용제외
- 포획·채취금지, 어구의 사용금지, 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규정은 시험어업에 미적용
- 포획·채취금지, 어구의 사용금지 규정의 적용제외

1. 양식어업 또는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수산종묘의 포획·채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조사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한 어미고기의 확보와 소하성 어류의 회귀량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산자원의 이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제공하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2.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분석(12)

### 2) 수산자원관리법 – 어업자 협약 등

#### 협약의 체결

- 목적 : 일정한 수역에서의 효율적인 자원관리
- 당사자 : 어업자 또는 어업자 단체
- 효력 :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 내용
  - 대상수역, 대상자원 및 대상어업
  -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조치 및 방법
  - 협약의 유효기간
  - 협약 위반 시 조치사항
  - 참가하지 아니한 어업자의 참가를 위한 조치방안
  -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등

- 운영회 설치
  - 어업자협약을 체결·관리하기 위한 자율적 기구 설립
  -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
- 협약 승인
  - 승인기관: 근해어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연안어업 : 시·도지사
  -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 승인조건 : ①수산자원 보호, 어업조정 및 어업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②어업자협약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수산업법」,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협약의 공고 : 협약의 내용을 공고 및 열람 허용
- 협약 폐지
  - 대표자가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
  - 협약이 폐지된 경우 공고
- 협약 준수 및 승인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3. 양식산업발전법 분석(1)

### 1) 양식산업발전법 – 목적

#### ❖ 목적(법 제1조)

- 양식산업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향상에 이바지

#### ❖ 정의(법 제2조)

구 분	세 부 내 용
양식	•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양식업권	•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양식업을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관련사업	• 양식용 종자·사료·약품·기자재의 제조·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가공·유통·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상기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법 제5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식업자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3. 양식산업발전법 분석(2)

### 1) 양식산업발전법 – 면허의 특성

#### ❖ 양식업의 면허(법 제10조제3항)

- 양식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                                     |  |
|-------------------------------------|--|
|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
| 2. 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                   |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                             |
|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  |

#### ❖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법 제11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

-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3. 양식산업발전법 분석(3)

### 1) 양식산업발전법 – 면허의 특성

#### 유효기간

- 제17조에 따라 양식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함

#### 심사·평가

-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

#### 양식업권

- 면허를 받은 자와 양식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양식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양식업권을 취득

#### 유어장 지정

-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

# Ⅲ. 수산관련 법제도 분석

## 3. 양식산업발전법 분석(4)

### 3) 양식산업발전법 – 양식산업의 육성

####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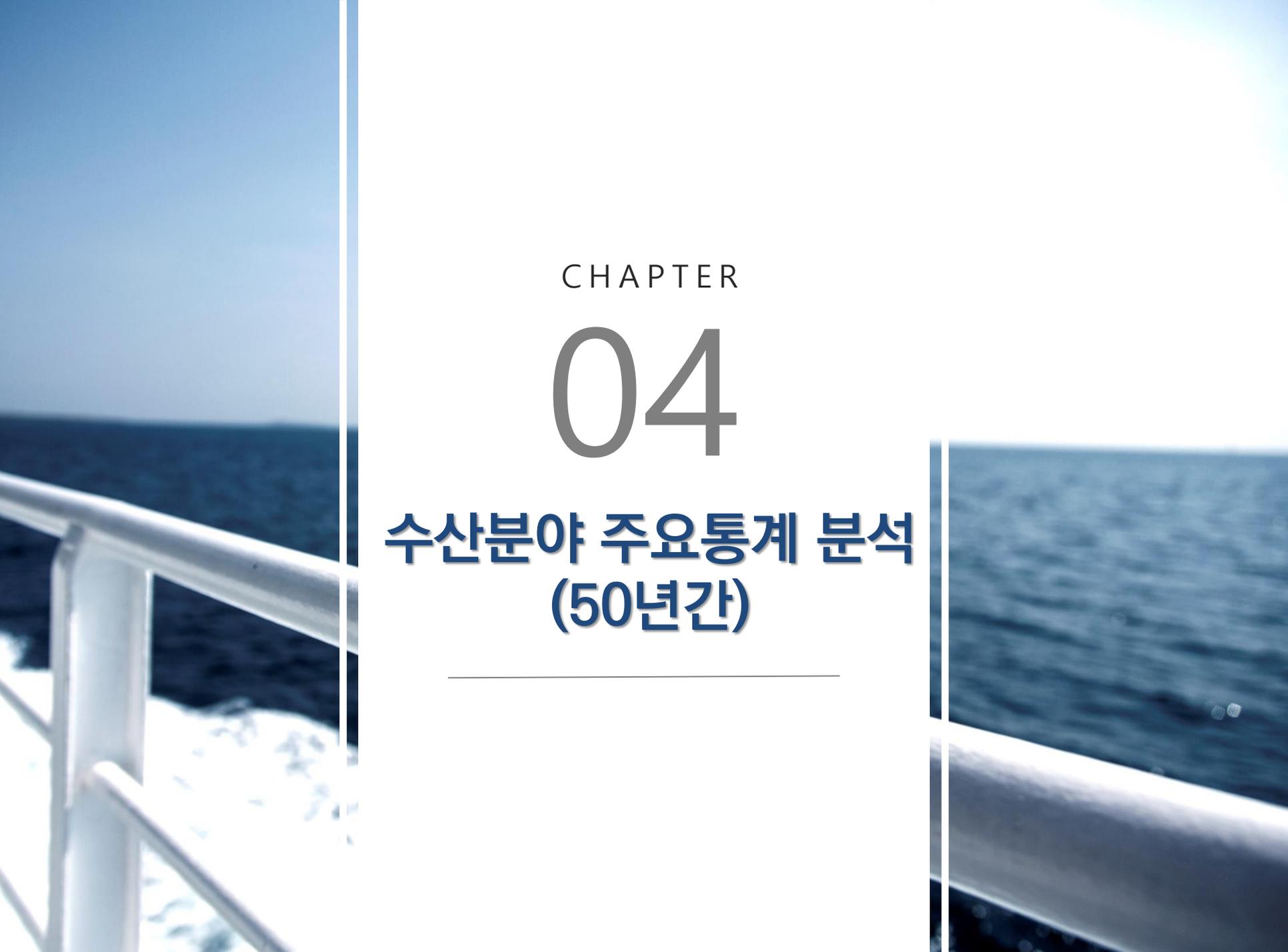
-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간 협업경영과 양식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제59조)

####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제60조에 따라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
- 양식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 가능

####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
-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
- 양식산업전문인력의 경력 관리 및 인증
- 해외 양식산업전문인력의 국내 채용 및 국내 양식산업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 그 밖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CHAPTER

# 04

## 수산분야 주요통계 분석 (50년간)

---

# Ⅳ. 수산분야 주요통계 분석(50년간)

## 1. 어가인구 및 어업가구 변화 추이

☑ 약 50년간 어가인구 및 어업가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이로 인해 어업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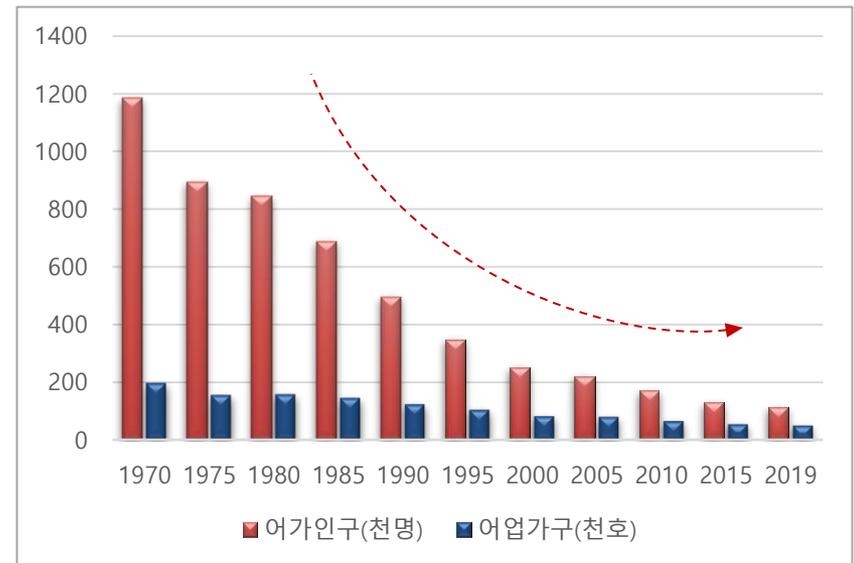
- 어가인구수(천명): (‘70)1,185 → (‘80)844 → (‘90)496 → (‘00)251 → (‘10)171 → (‘19) → 113(1970년대비 90.5%감소)

- 어업가구수(천호): (‘70)195 → (‘80)157 → (‘90)122 → (‘00)82 → (‘10)65 → (‘19) 50(1970년대비 74.4%감소)

[어가인구 및 어업가구 현황(2019년말 기준)]

(단위 : 천명, 천호, 명/호)

연도	어가인구	어업가구	가구당인구
1970	1,185	195	6.1
1975	894	154	5.8
1980	844	157	5.4
1985	689	145	4.8
1990	496	122	4.1
1995	347	104	3.3
2000	251	82	3.1
2005	221	80	2.8
2010	171	65	2.6
2015	128	54	2.4
2019	113	50	2.3



# IV. 수산분야 주요통계 분석(50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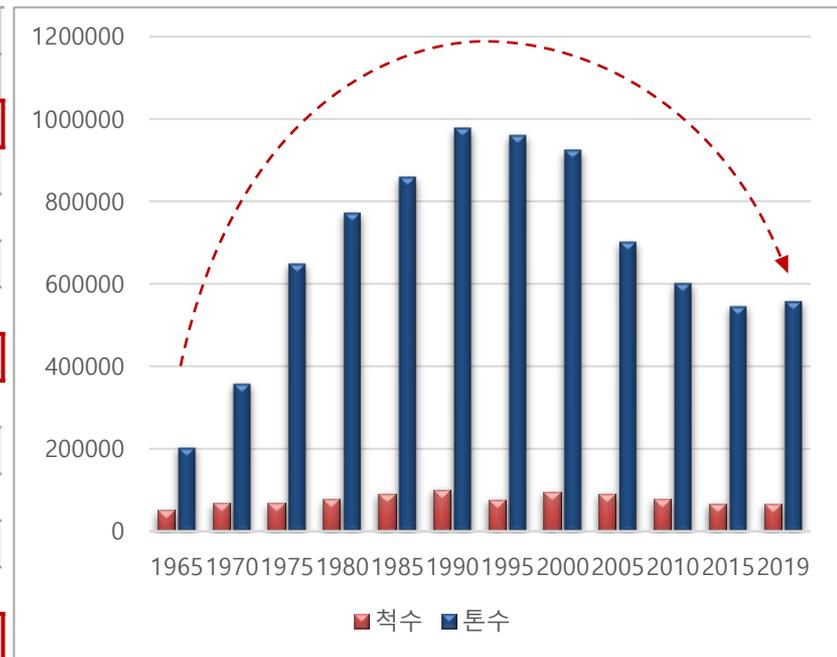
## 2. 어선척수 변화 추이

- ☑ 우리나라 어선등록척수는 1990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 또한, 무동력선이 점차 감소하여 2019년 현재 동력화율은 98.8%로 100%의 근접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

[어선등록현황(2019년말 기준)]

(단위 : 척, 톤, %)

년도	어선			
	척수	톤수	척당톤수	동력화율
1965	51,052	203,163	4.0	14.9
1970	68,400	358,000	5.2	20.6
1975	67,700	648,000	9.6	29.1
1980	77,600	771,000	9.9	65.7
1985	90,900	858,000	9.4	79.0
1990	99,658	976,731	9.8	79.6
1995	76,801	958,599	12.5	92.5
2000	95,890	923,099	9.6	93.1
2005	90,735	700,810	7.7	96.5
2010	76,974	600,622	7.8	97.0
2015	67,226	544,626	8.1	98.5
2019	65,835	557,341	8.5	98.8



# IV. 수산분야 주요통계 분석(50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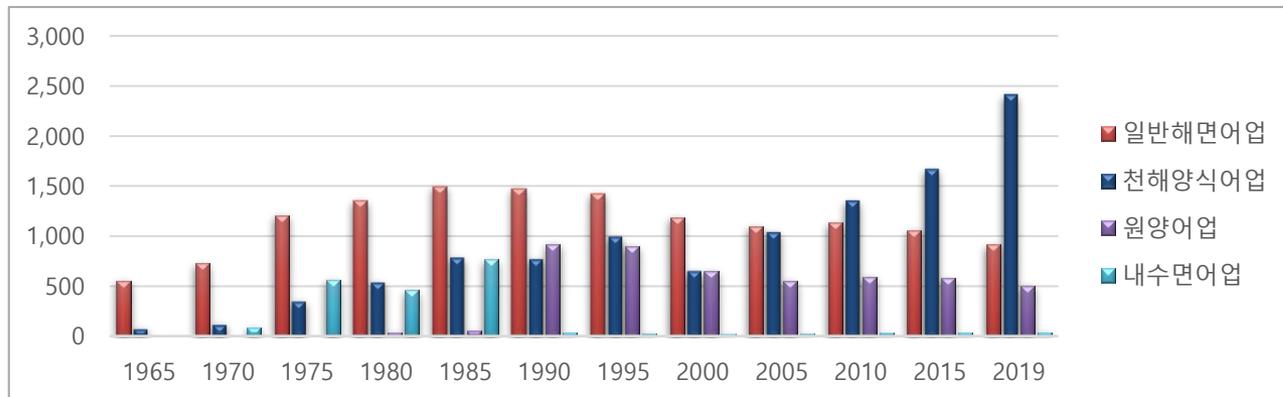
## 3. 업종별 생산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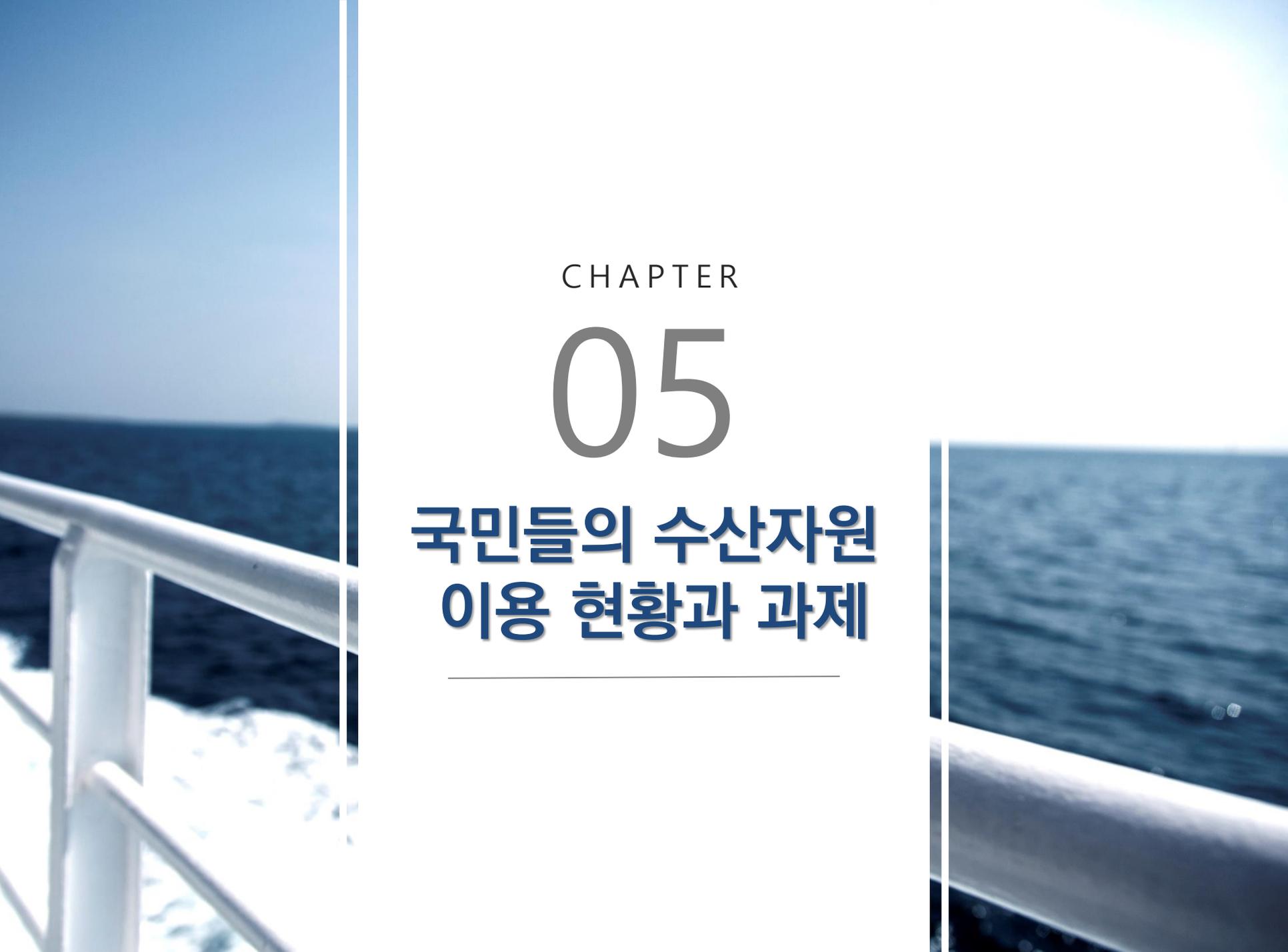
☑ 약 50년 전에는 ‘일반해면어업’이 전체의 8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천해양식어업’이 62.4%로 가장 많은 어업을 차지함

[어업별 어업생산동향(2019년말 기준)]

(단위 : 천톤, %)

어업별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총계	637	936	2,129	2,394	3,103	3,198	3,348	2,514	2,714	3,111	3,337	3,861
일반해면어업	554 (87.0%)	726 (77.6%)	1,209 (56.8%)	1,356 (56.6%)	1,495 (48.2%)	1,472 (46.0%)	1,425 (42.6%)	1,189 (47.3%)	1,097 (40.4%)	1,133 (36.4%)	1,058 (31.7%)	912 (23.6%)
천해양식어업	74 (11.6%)	119 (12.7%)	351 (16.5%)	541 (22.6%)	788 (25.4%)	773 (24.2%)	996 (29.7%)	653 (26.0%)	1,041 (38.4%)	1,355 (43.6%)	1,668 (50.0%)	2,410 (62.4%)
원양어업	0 (0.0%)	1 (0.1%)	3 (0.1%)	39 (1.6%)	53 (1.7%)	919 (28.7%)	897 (26.8%)	651 (25.9%)	552 (20.3%)	592 (19.0%)	578 (17.3%)	504 (13.1%)
내수면어업	9 (1.4%)	90 (9.6%)	566 (26.6%)	458 (19.1%)	767 (24.7%)	34 (1.1%)	29 (0.9%)	21 (0.8%)	24 (0.9%)	31 (1.0%)	33 (1.0%)	35 (0.9%)





CHAPTER

# 05

## 국민들의 수산자원 이용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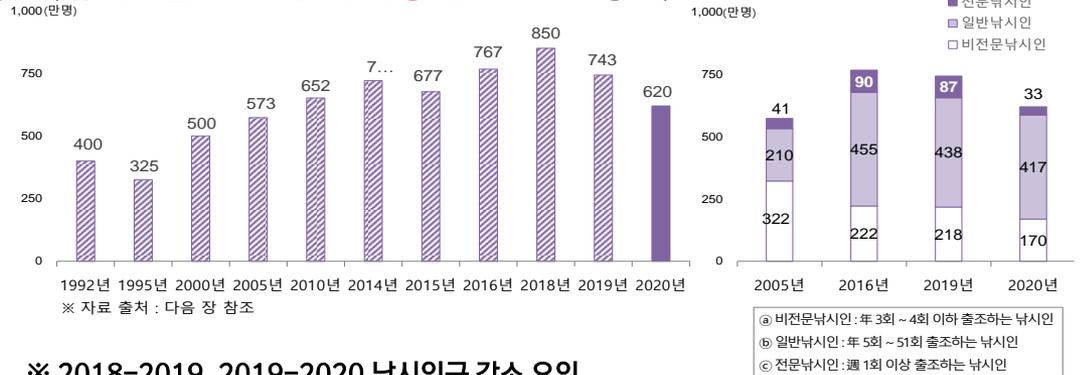
---

# V. 국민들의 수산자원 이용 현황과 과제

## 1. 국민들의 낚시활동(1)

### 가. 국내 낚시인구 현황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낚시인구는 620만명임(낚시인을 '연간 3회 이상 출조자'로 정의)



※ 2018-2019, 2019-2020 낚시인구 감소 요인

- 2019년 한 해 폭염과 역대 최다 태풍 내습 등,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대외활동 제약 등

### 2016-2019-2020

- '전문낚시인구'(주 1~2 회 이상 출조 낚시인)의 경우 2016년이나 2019년에 비해 바다낚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민물낚시인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응답자		낚시인	
	사례수	%	사례수	%
남 성	2,323	51.9	632	63.2
여 성	2,153	48.1	368	36.8
계	4,476	100.0	1000	100.0

### 연령별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응답자		낚시인	
	사례수	%	사례수	%
20대	605	13.5	116	11.6
30대	1,104	24.7	254	25.4
40대	1,196	26.7	303	30.3
50대	947	21.2	216	21.6
60대이상	625	14.0	111	11.1
계	4,476	100.0	1,000	100.0

### 시도별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응답자(A)	사례수	4476	987	331	254	263	214	231	168	79	653	162	138	167	156	183	204
	%	1000	221	74	57	59	48	52	38	18	146	36	31	37	35	41	46	45	19
낚시인(B)	사례수	1000	306	90	46	56	43	43	33	8	161	20	24	27	28	32	32	40	11
	%	100	306	9	46	56	43	43	33	08	161	2	24	27	28	32	32	4	1.1
B/A		223	310	272	181	213	201	186	196	101	247	123	174	162	179	175	157	200	128

# V. 국민들의 수산자원 이용 현황과 과제

## 1. 국민들의 낚시활동(2)

### 나. 낚시유형별(바다/민물) 낚시조획 현황

☑ 2020년 기준 낚시 총 조획량은 29,525톤으로 추정(해양수산정책연구소, 2020)

- 바다낚시 21,909톤(74.2%), 민물낚시 7,616톤(25.8%)
- 총 조획량은 출조지 중 '경남'(5,164톤)과 '경기'(3,777톤)에서 가장 많으며, 해역별로는 '남해'(8,584톤), '서해'(7,548톤), '동해'(5,777톤) 순

### 조획어종

- 바다낚시 : '우럭', '광어', '노래미', '볼락', '도미', '감성돔' 순
- 민물낚시 : '붕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잉어', '배스', '쏘가리', '메기' 등 순

바다낚시 기준 (중복)	전 체	낚시유형별(%)	
		바다낚시	바다+민물낚시
사래수(명)	4,119	2,212	1,907
우럭/우럭기/조피볼락	25.8	25.8	25.7
광어/넙치	9.5	7.8	11.2
노래미/어랭이	5.9	6.5	5.3
볼락	3.5	3.5	3.6
도미/돔	3.5	2.6	4.4
감성돔/감성잉어/남정바리	3.3	3.3	3.3
고등어/고도리	3.2	3.9	2.5
주꾸미	2.8	3.4	2.3
부시리/쌍어/허라스	2.8	2.3	3.3
농어/갈따구	2.8	2.1	3.4
참돔	2.7	2.1	3.3
꼬시레기/꼬시락/쌍둥어	2.1	2.7	1.6
송어	2.0	1.6	2.3
갈치/꽃치	1.8	2.0	1.6
문어	1.7	2.1	1.3
도다리	1.6	1.7	1.5
돌돔	1.3	1.2	1.4
가지미/기름가지미	1.2	1.0	1.4
뱅에돔/흑돔/구로다이	1.2	1.2	1.2
붕장어/아나고	1.0	0.5	1.5
학꽂이	1.0	1.2	0.9
전갱이/아지	0.8	1.1	0.5
갑오징어	0.8	0.7	0.9
썩뱅이	0.7	0.6	0.8
열기/불볼락/열갱이	0.7	0.8	0.5
오징어	0.6	0.6	0.7
쥐노래미/고래치	0.6	0.7	0.5
장어	0.6	0.5	0.7
복어	0.5	0.8	0.3

민물낚시 기준 (중복)	전 체	낚시유형별(%)	
		민물낚시	바다+민물낚시
사래수(명)	2,902	995	1,907
붕어	44.8	50.2	42.1
잉어	8.4	5.8	9.6
배스	4.7	4.0	5.1
쏘가리	2.9	2.1	3.3
메기	2.9	2.1	3.3
우럭/우럭기/조피볼락	2.6	1.7	3.0
광어/넙치	1.9	2.2	1.7
향어	1.7	1.6	1.8
피라미	1.7	2.4	1.3
가물치	1.6	0.8	2.0
송어	1.4	1.3	1.4
송어	1.3	1.4	1.3
누치	1.2	0.7	1.5
농어/갈따구	1.2	1.0	1.3
광어	1.2	1.3	1.1
참붕어	0.8	0.3	1.0
떡붕어	0.7	0.6	0.8
빙어/괭어	0.7	1.1	0.5
가지미/기름가지미	0.6	0.6	0.6
뱅에돔/흑돔/구로다이	0.5	0.5	0.5
산천어	0.5	0.5	0.5
고등어/고도리	0.5	0.5	0.5
꺼지/꺼꾸어/꺼저구	0.5	0.3	0.5
민어	0.5	0.2	0.6
부시리/쌍어/허라스	0.4	0.5	0.4
감성돔/감성잉어/남정바리	0.4	0.5	0.4
참돔	0.4	0.3	0.5
도미/돔	0.4	0.5	0.3
은어	0.4	0.3	0.4
노래미/어랭이	0.4	0.5	0.3

※ 민물낚시 조획어종 중 우럭, 광어 등은 실내낚시터 이용자

### 조획량

- 바다낚시 '우럭' : 1회 출조 시 조획수는 평균 3.4마리/회, 무게는 평균 465.6g/마리
- 민물낚시 '붕어' : 1회 출조 시 조획수는 평균 4.5마리/회, 무게는 평균 298.2g/마리

구 분	사래수 (명)	바다낚시 기준(중복)	
		조획수(마리)	어종무게(g)
전 체	4,119	3.7	460.1
우럭/우럭기/조피볼락	1,754	3.4	465.6
광어/넙치	650	2.9	612.4
노래미/어랭이	402	3.6	351.4
볼락	240	3.9	333.8
도미/돔	240	2.7	613.0
감성돔/감성잉어/남정바리	224	3.1	510.2
고등어/고도리	218	4.5	357.3
주꾸미	192	10.5	352.0
부시리/쌍어/허라스	191	3.1	939.1
농어/갈따구	188	2.7	587.7
참돔	186	2.9	694.5
꼬시레기/꼬시락/쌍둥어	145	6.5	214.1
송어	134	3.1	518.6
갈치/꽃치	124	6.4	496.7
문어	117	3.4	783.5
도다리	109	4.1	471.2
돌돔	88	3.0	578.9
가지미/기름가지미	84	5.1	294.6
뱅에돔/흑돔/구로다이	82	2.8	516.0
붕장어/아나고	70	2.9	338.8
학꽂이	69	6.9	320.5
전갱이/아지	57	5.7	261.3
갑오징어	55	5.5	384.2
민어	18	4.2	465.5
부시리/쌍어/허라스	17	2.4	377.4
감성돔/감성잉어/남정바리	16	2.1	239.4
참돔	16	2.9	428.8
도미/돔	16	2.5	449.4
은어	15	7.5	198.0
노래미/어랭이	15	2.3	172.3

구 분	사래수 (명)	민물낚시 기준(중복)	
		조획수(마리)	어종무게(g)
전 체	2,902	4.0	348.2
붕어	1,747	4.5	298.2
잉어	326	3.2	546.1
배스	185	3.7	538.1
쏘가리	114	3.4	426.5
메기	113	3.1	418.0
우럭/우럭기/조피볼락	101	2.6	273.4
광어/넙치	73	3.2	468.8
향어	68	2.7	702.8
피라미	65	8.9	129.1
가물치	63	2.7	666.5
송어	55	2.8	315.9
송어	52	3.4	537.6
누치	48	3.6	554.4
농어/갈따구	46	2.6	396.2
장어	46	3.3	404.8
참붕어	31	3.1	399.0
떡붕어	28	6.6	561.5
빙어/괭어	26	12.4	203.9
빠가사리	23	4.0	107.6
산천어	20	2.7	189.1
고등어/고도리	18	2.6	306.3
꺼지/꺼꾸어/꺼저구	18	6.4	146.1
민어	18	4.2	465.5
부시리/쌍어/허라스	17	2.4	377.4
감성돔/감성잉어/남정바리	16	2.1	239.4
참돔	16	2.9	428.8
도미/돔	16	2.5	449.4
은어	15	7.5	198.0
노래미/어랭이	15	2.3	172.3

# V. 국민들의 수산자원 이용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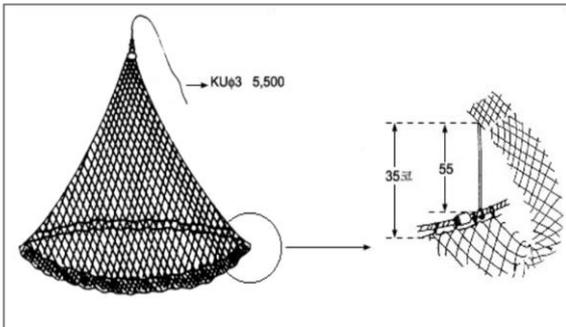
## 2. 비어업인(일반국민) 수산물 포획채취 현황(1)

### 가. 규정상 허용된 도구 및 방법

☑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해당 7개의 어구어법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하고,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 ①투망, ②쪽대,반두,4수망, ③외줄낚시, ④가리,외통발, ⑤낫대, ⑥집게,갈고리,호미 (⑦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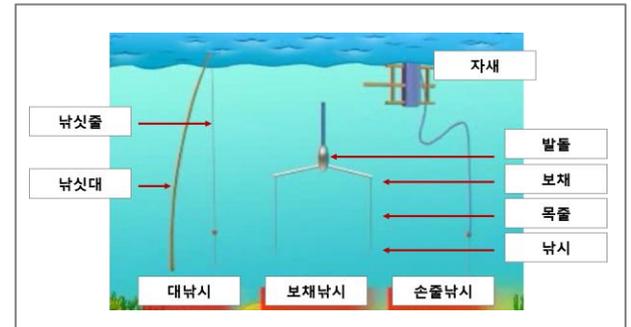
#### ① 투망



#### ② 반두, 쪽대, 4수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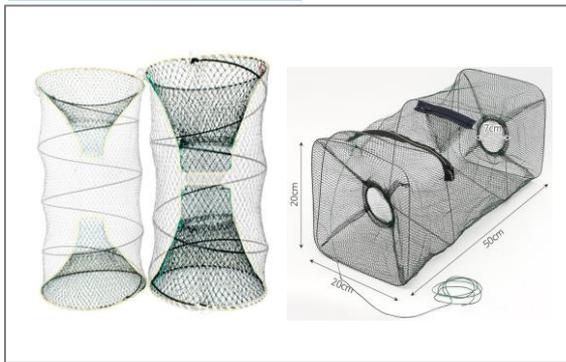
#### ③ 외줄낚시



#### ④ 낫대



#### ⑤ 가리, 외통발



#### ⑥ 집게, 갈고리, 호미



# V. 국민들의 수산자원 이용 현황과 과제

## 2. 비어업인(일반국민) 수산물 포획채취 현황(2)

### 나.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도구 및 방법(1)

☑ 비어업인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도구 또는 방법으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 개불펌프

- 개펄에서 불법 개불잡이 도구인 일명 “빠라뽕”을 이용하여 개불채취에 이용되고 있으며 1m가량 되는 길이의 펌프 형태로, 개펄의 구멍에 펌프질을 해 개불을 빨아들이는 형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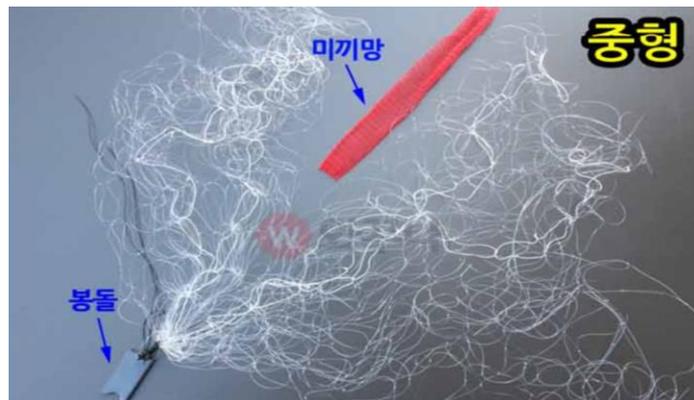


#### ▶ 대상어종

-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개불을 포획
- 어획강도 : 초보 비어업인도 개불 100마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쉬워 어획강도가 높음

#### ㉡ 게그물

- 게그물은 백사장,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꽃게 잡이에 사용되며, 그물망 안에 미끼(각종 생선머리 : 고등어, 갈치, 전갱이 등)를 넣어 물 속에 투입하는 방식임



# V. 국민들의 수산자원 이용 현황과 과제

## 2. 비어업인(일반국민) 수산물 포획채취 현황(3)

### 나.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도구 및 방법(2)

#### ㉓ 뜰채

- 뜰채는 주로 서해안 갯벌 해안에서 사용하는 비어업인의 어업도구로 많이 사용
- 특정인구는 국민청원에 뜰채의 이용을 위해 법률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는 비어업인의 불법어업행위로 단속 중에 있음



#### ㉔ 작살

- 수중레저활동(스쿠버 장비 활용) 중 끝이 보족한 장대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방식
- 어업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야밤에 해루질을 하는 비어업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비어업인 불법어업 위반 건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A photograph of a ship's white railing against a blue sea and sky, with a white text box overlaid. The railing is in the foreground, and the sea is in the background. The sky is bright blue with some light rays. The text box is white with a blue corner and contains the Korean tex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